

## 행정안전부예규

### ○행정안전부예규 제192호

국가DB사업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8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5조의 2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정보DB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DB사업”이라 함은 “행정정보DB구축사업”과 “지식정보관리사업”을 일괄하여 칭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정보DB구축사업”(이하 “행정DB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전자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여러 기관에 공유가 필요한 자료를 전자화하는 사업
  - 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자화하는 사업
  - 다.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화하는 사업
3.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하 “지식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을 전자화하고 지식정보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식정보자원을 전자화하는 사업
  - 나. 전자화된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는 사업
  - 다. 기 구축된 지식정보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추출, 조합 등 지식정보자원을 재가공하는 사업 등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DB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확정된 국가DB사업의 대상사업을(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7. “운영기관”이라 함은 국가DB사업을 통해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기관도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8. “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감리법인”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DB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이하“감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장관은 국가DB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국가DB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DB사업은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하 “정책사업”이라 한다)과 공모에 의해 발굴하는 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국가DB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타 제2조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구축·정비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추진체계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DB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대상사업 선정, 검토 및 확정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 예산의 확보 및 출연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 장관은 당해년도 국가DB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사업의 발굴
2. 사업의 공모 및 심사
3.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종합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의뢰
5. 사업관리
6. 감리 및 검사 지원
7. 운영평가
8.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9.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점검

11.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검토·조정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진도 관리
4. 검사 및 인수
5.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6.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7.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8조(운영기관의 역할)**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제9조(사업자의 역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3. 시험운영 및 그 기간동안의 안전성 보장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제10조(사업심의위원회 및 관련협의회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과제 선정

**제11조(정책사업의 발굴·검토·확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사업은 장관이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국가,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발굴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의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장관은 정책적 중요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확정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책사업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를 받은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모사업의 공고·심사·확정)** ①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의 사업규모, 정보화 정책방향 및 중점지원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가DB사업을 공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의 공고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마감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가DB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서 정한 신청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체검토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이 국가DB사업의 소요장비 및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사업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심사를 완료한 후에 사업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업별 검토의견, 후보사업 및 지원예산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사전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일정기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특성상 주관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취소)**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5조(제안요청서의 작성)**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해 장관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사업개요,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제안요청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사무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준하는 계약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17조(계약의 방법)**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계약체결의 통보)**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및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이행동의서의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사업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불량하여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주관기관에게 원인이 있거나 주관기관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잔여예산의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5장 진도관리 및 결과보고 등

**제23조(진도관리)**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협의회에서 관련기관에게 진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표준화 및 보안)**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감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에는 착수, 분석, 설계 등 개발단계에서 중간감리와 개발완료 후의 최종감리를 포함한다.

③ 감리법인은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 ① 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의해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시연회 등의 개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지적재산권의 처리)** ① 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 수행한 경우 지적재산권은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하며, 다른 기관 등에게 보급·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은 서비스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등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단, 지식사업의 경우 응용S/W 및 디지털화된 자료등에 대한 지적재산은 전문기관과 지적재산을 양수받을 주관기관 등(이하 "양수기관"이라 한다)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지식사업 결과물의 공동소유권자인 전문기관과 양수기관은 서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당해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및 보고서 등 유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하며, ISP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이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적 발생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하자보수 종료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하며, 주관기관은 유형적 발생품을 즉시 양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점검 및 운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양도 시 소유권 양도 이전 및 이후에 사업결과물 운영상황,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필요시 국가DB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31조(성과점검)**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DB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

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DB사업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DB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주관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결과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사업비 분담의 경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 및 제29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받은 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33조(사업의 참여제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 대해 사안의 귀책사유에 따라 국가DB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DB사업의 취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약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불량사업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점검 결과, 성과가 저조한 사업

**제3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국가계약법, 정보화촉진기본법과 기타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5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고시 이전에 확정·추진 중인 행정정보DB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이전의 지침에 의한다.

② 이 지침 이전에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 1. 제정이유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시 (구)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 온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 온 행정정보DB구축사업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관된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두 사업을 포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장)

##### (1) 지침의 목적(제1조)

행정정보DB구축사업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제3조)

장관은 국가DB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국가DB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은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관리

나. 추진체계(제2장)

(1)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등의 역할 규정(제5조~9조)

(2) 사업심의위원회 및 관련협의회 구성(제10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심의를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다. 과제 선정(제3장)

(1)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의 발굴(제11~12조)

국가DB사업의 대상사업을 정책적으로 또는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검토·심의·심사를 거쳐 확정토록 함.

(2) 사업계획서의 사전공개(제13조)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일정기간 사전공개토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제4장)

(1) 계약사무의 처리(제16조)

계약의 추진주체는 전문기관의 계약관이 담당하도록 함.

(2) 계약의 방법(제17조)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요청토록 함.

(3) 계약이행동의서의 제출(제19조)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이행동의서를 제출케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 및 이행력 제고

마. 진도관리 및 결과보고 등(제5장)

(1) 감리시행 의무화(제25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리 실시를 의무화

(2) 전문기관의 검사참여 책임성 강화(제26조)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의 검사에 참여하고, 검사의견을 주관기관에 통보토록 하여 책임성 강화

(3) 전문·주관기관 간 소유권 양도·양수 의무화(제29조)

사업완료 후 전문기관은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이를 즉시 양수토록 하여 기관 간 갈등 방지

(4) 성과점검 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제31조)

매년 사업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에 반영

(5) 성과부진 주관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제33조)